

정부, 실적공사비제도 대신 표준시장단가제 도입

공사비 현실화 기대감 높다

업체 “경영난 해소 도움”

정부가 저가공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 강원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실적공사비 대신 실제 시장 가격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시행하고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한다.

기존의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도한 입찰 경쟁으로 저가 공급됐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물가인상률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해왔다.

특히 실적공사비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상승한 반면, 공사비 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6.1%, 24.2%나 올라 건설사 경영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 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해 공사비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100억~300억원 미만 사업은 표준단가가 안착될 때까지 적용시기를 늦추고 대신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를 적

용키로 했다.

이처럼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이 배제되고 표준시장단가제도로 전환되자 지역건설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실적공사비 제도는 입찰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저가낙찰이 일어나고 업계의 경영난과 시설물 품질 및 안전성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표준시장단가제 도입은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고시한 올해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하면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4.71%) 올랐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도내 조달사업 60% 상반기 집행

강원조달청, 8350억원

강원도내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달사업 목표액의 60%가 상반기에 집행된다. 강원조달청(청장 영광희)은 올해 조달사업 목표를 지난해 보다 2.4% 증가한 1조 3930억원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60% 수준인 8350억 가량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키로 했다.

이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목표를 반영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강원조달청은 발주계획을 사전에고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 하는 한편 신속한 유동성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 1분기까지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 효과가 높은 시설공사 계약을 집중 체결할 계획이다.

영광희 청장은 “조달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유동성 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홍천군 하천정비사업 팔걸었다

올 313억 투입 지장목 제거·구조물 정비

홍천군은 올해 313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홍천군은 올해 남면 양덕원천, 내면 방내천에 137억원을 들여 편입토지 보상등 재해예방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78억원을 들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으로 지정관리하는 295곳 691km중 148곳 367km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고 나머지 147곳 324km는 2018년까

지 완료, 체계적인 하천정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86억원을 들여 홍천읍 상오안천 등 15개 지구 11.5km에 실시시설을 마치고 인허가와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홍천군은 전국 시·군중 가장 많은 면적으로 하천이 많아 집중호우시 농경지 유실, 매몰과 가옥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 등 주민생활 환경과 밀접해 소하천정비 5개년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집중투자하는 등 하천가꾸기사업

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는 34개 지구에 52억원을 투자완료했다.

또 올해 12억원을 들여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 제방 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 호안정비, 구조물정비 등 하천가꾸기사업을 전개한다.

이문옥 홍천군청 하천시설담당은 “하천정비사업은 수해예방과 직결되고, 하천에 있는 풀베기와 지장목 제거는 가족사료와 빨감도 얻을수 있어 하천정비가 시급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천/권재혁 kwonjh@kado.net

‘표준시장단가’ 이달부터 적용 실적공사비보다 평균 4.18% 올라

이달부터 정부가 발주한 건설공사에는 기존 실적공사비보다 평균 4.18% 오른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다.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정부 발주 공사는 3월부터, 지자체 발주 공사는 상반기 중 표준시장단가(옛 실적공사비 대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기사 8면

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표준시장단가와 개정 계약예규를 각각 공고 및 고시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해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3월 발주공사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실적공사비가 실제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성까지 저하 시킨다는 우려에 따라 가격정보 수집체계, 관리체계 등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항목 중 현실단가와 괴리가 큰 77개 항목을 우선 현실화했다. 나머지는 물가상승분만 반영한 후 순차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형기자 kth@

NEWS & 행자부만 ‘표준시장단가’ 후속조치 비협조

지자체 발주 공사엔 ‘능장 적용’

국토교통부가 1일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에 비해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시 4.71%) 올랐다. 토목의 경우 거푸집(보통마감)이 1만9469원에서 2만4336원으로, 흙쌓기(토사)가 1137원에서 1333원으로, 포장(보조기층 포설)이 3111원에서 3831원으로 각각 25%와 17%, 23% 상승했다. 건축 역시 거푸집(보통마감)과 도배(초배지 안손 공동주택) 단가가 각각 21%와 26% 상향조정됐다.

이번 표준시장단가는 발주청과 민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쳤다. 이어 민·관 동수로 짜여진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계적인 단가 현실화와 보정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계약예규를 바꿔 기존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하고 10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영구 배제하는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100억~300억원 사업에 대해서

행자부 아직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예규 손도 안대 문제

정부 단가 현실화 방침 따른 300억미만 적용 배제 서둘러야

는 계약예규에 담은 대신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운용방향을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저가 하도급 등 건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새 표준시장단가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실단가를 반영한 표준시장단가는 1일 이후 정부 발주공사분부터 적용됐다. 기존 시행 공사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제도에 따라 시차를 두고 공사비 상승 혜택이 적용된다.

에스컬레이션이란 건설업체가 정부나 공공기관과 공사계약을 맺은 후 90일이 지나고 3% 이상의 물가변동이 생기면 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당초 계약보다 높

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지자체 발주 공사다. 행정자치부는 아직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예규를 손보지 않고 있다.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만간 100억원 이상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다만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한시 배제하려면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지방계약법 시행령·예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의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물론 실적공사비의 100억원 미만 영구 배제, 100억~300억원 미만 한시 배제의 적용시기까지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 단가 현실화 방침에 행자부만 유독 비협조적인 것 같다”며 “지자체 발주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조속히 적용되고 300억원 미만 공사의 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한형용기자 kth@

대한건설협회강원도회 제21대 회장선거 공고

대한건설협회강원도회 회장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등록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목적: 대한건설협회강원도회 제21대 회장 선출
2. 선거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5일(수) 11:30
3. 선거장소: 춘천 베니키아 베어스관광호텔 2층 소양홀
4. 후보자 자격요건
 - 강원도회의 관내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회원으로 있는 자로서 협회 정관 및 선거 관리규정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5. 후보자 등록장소: 대한건설협회강원도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춘천시 동면 후만로 166 건설회관 2층 건설협회 사무처)
6. 후보자 등록 기간: 2015. 3. 9(월) ~ 3. 13(금) (09:00~18:00)
7. 후보자 기호 결정: 2015. 3. 13(금) 18:00, 도회 회의실
8. 후보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등 : 등록신청서 등 서식은 공고일부터 교부
 - 등록신청서 1부
 - 첨부서류: ①서약서 1부, ②이력서 1부, ③명함판 사진 3매, ④선거권자 추천서(선관위가 교부한 용지에 한함) 및 추천인 명단 각 1부
 - * 선거권자의 추천은 6개 시·군 지역 1명이상, 총 선거권자의 1/5이상
 - ⑤선거 특별회비 입금증, ⑥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협회 임원의 경우 임원사임서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선거 특별회비: 일천만원(특별회비는 반환되지 않음) * 특별회비 납부계좌: 농협 301050-55-001257 (예금주: 대한건설협회강원도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설협회강원도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전화번호: 033-254-2912)

2015. 3. 2

대한건설협회강원도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